

의안번호	제 330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**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
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**

발 의 자	김국기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6월 22일

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
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
의안 번호	33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6월 22일
발 의 자 : 김국기, 이태훈, 이옥규,
김성대, 임영은, 오영탁,
이의영

주 문

-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
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

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제2항 및 「충청북도의회 기본조례」
제44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
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

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
- 「충청북도의회 기본조례」 제44조

붙임 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1부.

충청북도의회

2023. 6.

수신 : 의 장

제목 :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·교육감 및
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

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제2항 및 「충청북도의회 기본조례」 제44조 제1항에 따라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충청북도지사·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.

◇ 출 석 일 :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의일

- '23. 7. 12.(수) 14:00(제1차 본회의)

- '23. 7. 21.(금) 10:00(제2차 본회의)

※ 의사일정 변경으로 본회의 개의일이 추가 또는 변경될 경우 추가 및 변경된 날을 출석일시로 함

◇ 출석장소 :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

◇ 출석이유 : 대집행기관질문·답변, 주요 안건처리 등

◇ 출석대상

- 충청북도지사, 충청북도교육감

- 「충청북도의회 기본조례」 제45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

· 부지사, 부교육감

· 도 본청 실·국·단·본부장, 정책기획관, 감사관

· 충북도립대학교총장, 자치연수원장, 농업기술원장, 보건환경연구원장,
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,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

· 도교육청 본청 국장, 감사관

※ 그 외 대집행기관질문 답변 대상자 포함